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  
도시·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
도시·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1. 23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안전관리과장 최광호)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(21.11.19.시행)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<sup>1)</sup> 서울특별시 강서구

1) 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1. 5. 18.]

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5. 18.]

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(안 제5조)
- 라.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(안 제6조)
- 마.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5조, 제24조  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35조, 제36조, 제37조, 제39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 의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22. 10. 4.~10. 24.) 결과: 의견 없음
  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  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  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개선의견 수용
    - 제4조 실태조사 시 성별,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 내용 반영
    - 제5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시 성별, 연령,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 고려 사항 반영
    - 제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성별고려 사항 반영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### 가. 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2021. 5. 18. 개정 공포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강서구의 각종 산업재해<sup>2)</sup>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 시키고자 제안됨.

### 나. 주요 제정내용

#### ○ 협력체계 구축(안 제3조)

-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#### ○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규정 (안 제4조~제5조)

-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
  -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고,
  -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, 정책개발 및 연구, 교육, 홍보 등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을 명시함.

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5. 26.>

1. “산업재해”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·설비·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
2. “중대재해”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.
3. “근로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
4. ~ 13. 생략

○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 규정(안 제6조)

-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,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활동 등을 수행하는 ‘안전보건지킴이’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안 제7조)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에,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하는 ‘산업안전보건위원회’의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고 그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도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, 그 관할 구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위원회의 구성·운영을 규정한 것이나, 이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,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다. 종합 의견

- 서울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중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의 규모가 38.5%(2021)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, 한 해 2천명 이상(2020년 2,062명)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노동의 질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.

- 최근 SPC 평택공장 끼임 사망사고를 비롯하여,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  
- 다만, ‘노동자’의 적용대상 및 ‘노동안전보건’의 영역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,
  - 사업장 내 현업 노동자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환경과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대상에 대하여,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기존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## **6. 토론요지: 생략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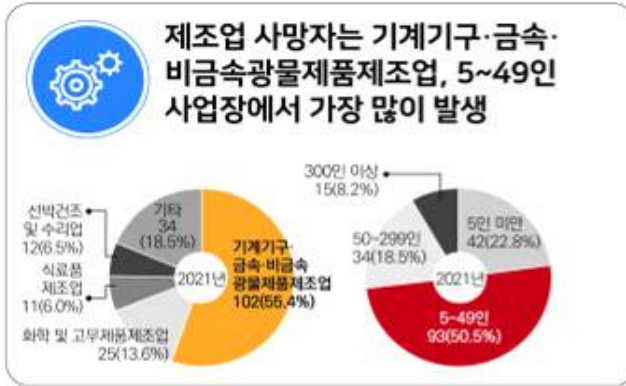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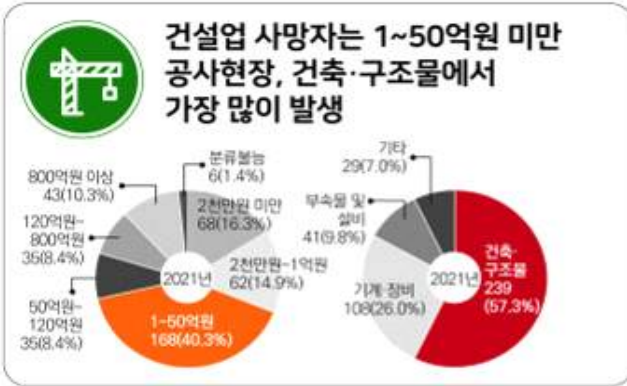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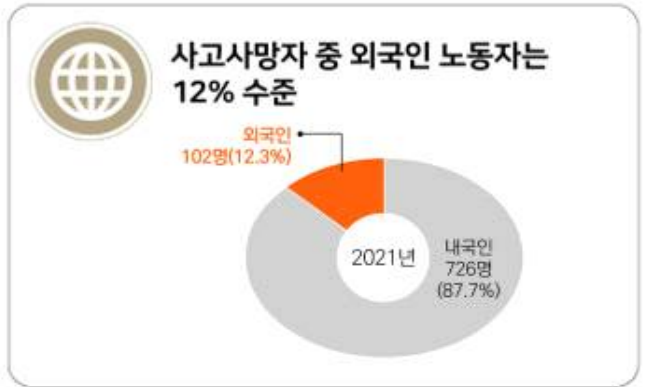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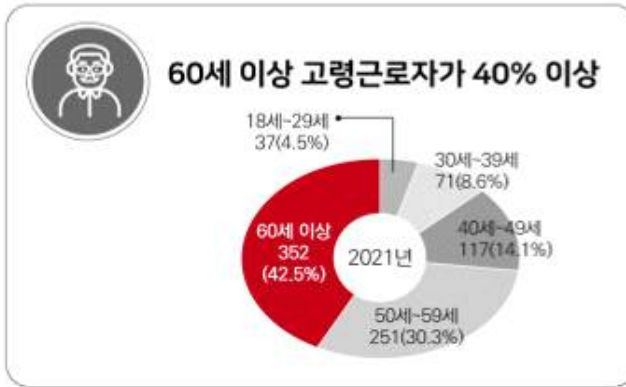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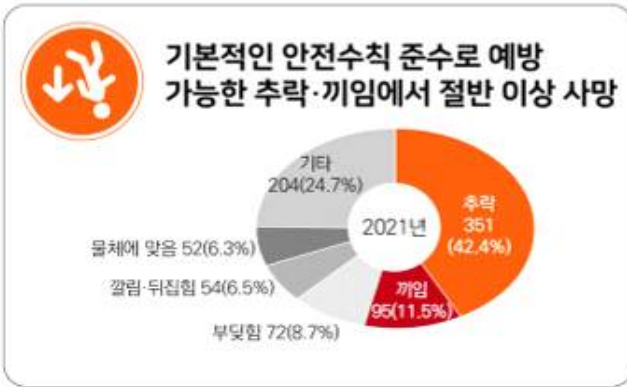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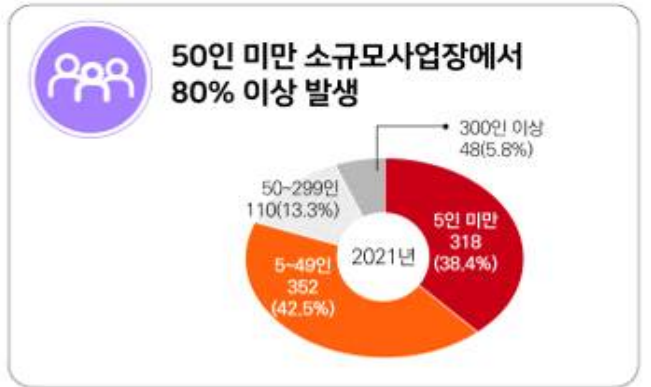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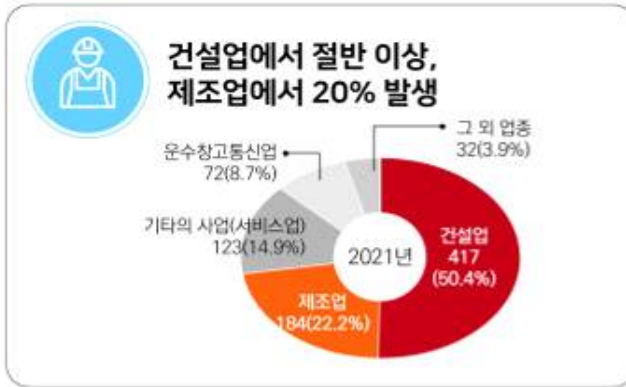
## 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# 참고

## 산업재해 발생관련 자료 (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)

(자료출처: 고용노동부 보도자료)



## □ 최근 5년간 기초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

광역	기초	사고사망자(명)							사고사망만인율(‰)		
	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증감	5년간 합계	'20년	'21년	증감 (%pp)
총계	전국 총계	964	971	855	882	828	△54	4,500	0.46	0.43	△0.03
서울	서울 소계	111	83	66	85	66	△19	411	0.19	0.15	△0.04
서울	종로구	5	2	1	2	5	3	15	0.08	0.20	0.12
서울	중구	4	2	0	4	3	△1	13	0.10	0.07	△0.03
서울	용산구	1	4	2	2	1	△1	10	0.14	0.07	△0.07
서울	성동구	5	4	4	6	4	△2	23	0.38	0.24	△0.14
서울	광진구	5	3	1	2	4	2	15	0.23	0.46	0.23
서울	동대문구	3	3	1	1	3	2	11	0.11	0.32	0.21
서울	중랑구	1	3	4	0	0	0	8	0.00	0.00	0
서울	성북구	8	2	2	2	4	2	18	0.25	0.47	0.22
서울	강북구	1	0	3	0	0	0	4	0.00	0.00	0
서울	도봉구	2	2	1	1	0	△1	6	0.21	0.00	△0.21
서울	노원구	2	1	0	0	0	0	3	0.00	0.00	0
서울	은평구	4	3	0	5	1	△4	13	0.75	0.14	△0.61
서울	서대문구	8	4	1	2	2	0	17	0.25	0.24	△0.01
서울	마포구	3	3	1	5	2	△3	14	0.23	0.09	△0.14
서울	양천구	4	2	2	3	3	0	14	0.36	0.37	0.01
서울	<b>강서구</b>	<b>9</b>	<b>11</b>	<b>5</b>	<b>8</b>	<b>7</b>	<b>△1</b>	<b>40</b>	<b>0.38</b>	<b>0.32</b>	<b>△0.06</b>
서울	구로구	4	2	4	0	3	3	13	0.00	0.19	0.19
서울	금천구	3	1	6	5	2	△3	17	0.27	0.10	△0.17
서울	영등포구	7	3	7	12	2	△10	31	0.35	0.06	△0.29
서울	동작구	5	1	0	3	1	△2	10	0.37	0.12	△0.25
서울	관악구	3	3	2	3	2	△1	13	0.39	0.25	△0.14
서울	서초구	7	6	5	5	4	△1	27	0.12	0.10	△0.02
서울	강남구	5	7	7	7	5	△2	31	0.10	0.07	△0.03
서울	송파구	11	4	3	3	7	4	28	0.10	0.24	0.14
서울	강동구	1	7	4	4	1	△3	17	0.34	0.09	△0.25

※ 사망만인율(%): 근로자 10,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(업무상사고 사망자수/근로자수×10,000)

**□ 산업안전보건법**

**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1. 5. 18.]

**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, 교육,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1. 5. 18.]

**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** ① 사업주(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(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·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)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·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.<개정 2020. 5. 26.>

1.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
2.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
3.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·설계·제조·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, 발주·설계·제조·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



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기계·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·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
2. 원재료 등을 제조·수입하는 자
3. 건설물을 발주·설계·건설하는 자

**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**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“산업안전보건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
2.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
3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, 이 법에 따른 명령, 단체협약,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·의결해서는 아니 된다.

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,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35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)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근로자대표
2.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
3.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(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)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
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.

1. 해당 사업의 대표자(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2. 안전관리자(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,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) 1명
3. 보건관리자(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,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) 1명
4. 산업보건의(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5.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(이하 “건설공사도급인”이라 한다)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1. 근로자위원: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,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2. 사용자위원: 도급인 대표자,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

**제36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)**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**제37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)**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근로자대표, 명예산업안전감독관, 해당 사업의 대표자,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1. 개최 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
3. 심의 내용 및 의결·결정 사항
4. 그 밖의 토의사항

**제39조(회의 결과 등의 공지)**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(社內報),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,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